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노무비) 기준 ■

【석면 외장재(슬레이트 등) 해체·제거공사 제곱미터(m²)당 일위 대가 표】

-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본 일위대가 표를 석면슬레이트해체공사 원가산정을 위해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 필독사항/ 관련법령/ 공정별 사진촬영예시/ 정보공개판례/ 대법판례 등 면밀히 필독 법리를 오해해석 않도록 주의.
- 특히 3. 발주자 책임법령 및 벌칙 필독 발주이후 시공방법, 공사기간, 공법변경 등에 대한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서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공종별 세부품목의 법령 및 산출근거는 별도 공개한 단가, 수량산출서 참조.

본 일위 대가 표 작성에 대한 타당성은 지자체(공기업) 감사원 감사에 따른 편저자 2011. 4. 11. 감사원 제출 감사원 검토한 자료임.

2019년 상반기 <일부개정>

사 단
법 인 한국석면환경협회
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노동부·환경부 석면교육기관

편저자 한 기 채
연락처 010. 8820. 3377

편저자 프로필



한 기 채

연락처

010-8820-3377

E-메일

kichae60@hanmail.net

약력 및 연구사항

- ▶ (2007~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 (2006~현) 석면작업관련 일위대가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실외, 실내, 코킹 재, 개스킷, 뿔칠 재(본 타일 포함), 방치폐기물 등)일위대가 편저
 -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편저(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적용)·석면농도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질 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 석면감리(고급, 일반) 원가계산서 편저
- ▶ (2006~현) 석면관련자료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 (2007~현) 석면처리의 이론과 실무(작업방법 등)교재 편저
- ▶ (2011~현) 석면관련 법령 및 판례요약 집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 (2012~현) 석면작업 고급감리
- ▶ (2015.01.~현) 이 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석면조사, 감리, 위험성평가 기관) 본부장
- 주요 기타사항-
- ▶ (2017.11.08.) 경기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 청 소속 공무원(약300명)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효율화 방안 교육
- ▶ (2007.08.~2014.08) 석면교육기관 석면관련 강사
- ▶ (2012.12.~2014.12) 한국석면조사연구원 고문
- ▶ (2013.09)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지역본부 현장공감소장 석면해체관련교육
- ▶ (2007.4~2011.4) 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 자문위원
- ▶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전 농림축산부장관) 농어촌슬레이트지붕의 문제와 대책방향전문가 포럼 전문가 위촉
- ▶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작업표준품셈 제정 자문위원
- ▶ (2003.5~2007.12)(사)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위원
- 연구-
- ▶ 석면슬레이트 석면해체·제거공법 연구개발(07.8 특허 등록) (수직, 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하지 않는 공법)

□ 목 차 □

- 일위 대가 표.....	0
----------------	---

□ 2018년 상반기 일위대가(1안), (2안) / 2018년 개정 및 시설 사항 / 자재, 장비 견적서 / 노임단가

1.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 필독사항.....	1
------------------------------	---

□ 특기사항

□ 발주자, 설계사 등 별도설계반영

□ 석면해체공사 정산 관련

□ 위생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근거

□ 석면해체업자에게 서류 등 제출 요구

□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자 관련

□ 안전조치의 미 조치에 대한 대법판례

□ 표1. 정산방법

□ 표2. 작업공정도<사진촬영 필수><2018.01.15. 시행>

□ 양식 1, 1-1 잔재 물 조사표 및 조사사진대장<사진촬영필수><2018.01.15. 시행>

2. 석면공사 발주 시 자격 등 관련 【 발주자(소유주) 등 필독사항.....	12
---	----

□ 석면해체공사 발주관련

□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이나 전문건설업면허 필요하지 않고,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계설치·해체는 비계면허 없이 할 수 있다는 노동부 답변<2016.08.19>

□ 석면해체공사는 건산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와 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국토교통부 회시 2017.05.15.>

□ 발주자(소유주)등 석면해체공사를 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증 외에 다른 면허요구 입찰참가자격 제한금지관련

□ 석면해체공사 시공실적심사 및 적격심사 관련

3. 발주자 등 석면해체공사 완료보고에 관한 작업내용 관련서류 목록.....	15
--	----

☐ 발주자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 받아야할 작업내용 관련서류 목록<감리완료 보고서첨부 지자체 제출서류>

4. 석면해체·제거작업 비용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16

5. 일위대가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세부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17

☐ 노동부 규정 ☐ 환경부 규정

6. 노동부, 환경부 발주자 책임 법령.....18

☐ 노동부 규정 ☐ 환경부 규정

7. 발주자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및 작업 기준준수 판단기준.....20

☐ 발주 시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 작업신고 대상, 작업 기준준수 판단 방법

8. 서류보존기간 및 석면작업내용정보공개판례(서울행정법원).....21

☐ 판례 및 공개목록

9. 석면작업장과 같은 작업 장소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등 대법판례.....28

1) 발주자(지 소장)책임자 및 원도급사 현장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사 및 치상죄 공동책임 있다는 판례.

2) 공사감리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죄 책임 있다는 판례

3)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3단계 계약관계 또는 발주자 ⇨원도급사 계약관계에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할 의무주체 사업주는 누구인가 판례

4)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그 자체 만으로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보건법 (현)제67조의2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양벌규정에 해당 된다는 판례

5) 석면해체작업장이 있고,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폐암 등이 악화되거나 발병되면, 그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석면이 원인이라는 인정 하는 판례

(2019년 상반기) 석면 외장재 (슬레이트 등) 해체·제거공사 일위 대가 표(m²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1. 해체·제거									일위 표1호
석면 해체 공		인	0.045	168,117	7,565				
보통 인부		인	0.011	125,427	1,380				
관리감독자 (적용여부발주자 판단)	(환경초급숙련기술자) (관리감독자과정 교육 이수자)	인			-				등록인력 기준 현장 책임자가 관리감독자교육 이수하고 겸직한 경우 제외
계					8,945			8,945	
2.습윤 작업	자재제거 전, 중, 후/ 보양바닥/ 장비/ 도구/ 작업대/청소 시 습윤 포함								일위 표2호
1) 분무기 손료	인건비의 1.5%	식	1				19		
2) 보통 인부		인	0.01	125,427	1,254				
계					1,254		19	1,273	
3. 바닥 비닐보양									일위 표3호
1) 노무비	보통 인부	인	0.007	125,427	878				
2) 바닥 보양비닐	0.15mm두께 1겹 폭3m * 4면 (2겹은 권장)	m²	0.032	44,000		1,408			
계					878	1,408		2,286	
4.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 품									일위 표4호
1)보호구 손료									
(1) 반면 마스크	3M-7502	EA	0.00004	39,000			2		
(2) 안전장화	ND10NRI	족	0.00004	50,000			2		
소 계							4		
2) 보호구 소모 품	<일2회 지급>								
(1)특급필터	3M-2091	조	0.11	4,500		495			<2018.개정>
(2)불 침투 방진복	EM-3300	벌	0.11	6,500		715			<2018.개정>
(3)불 침투 장갑	니트릴	켈레	0.11	260		29			<2018.개정>
(4)면장갑	(겉 착용 용)	켈레	0.11	270		28			<2018.개정>
소 계						1,267			
계						1,267	4	1,271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5. 소모 자재									일위 표5호
1) 폐기용 비닐 백	0.15mm두께 2겹 0.85m * 1.3m	매	0.27	750		203			개인보호구, 비닐, 갈레 등 폐기
2) 스티커	석면함유, 폐 슬레이트 전용	장	0.225	160		36			
3) 포장 비닐	0.15mm두께 2겹 (시험 통과 자재)	m'	0.006	58,000		348			
4) 밀봉 테이프	50mm*45m	m	0.0095	1,380		13			
5) 연결고리(줄)	PP16mm	m	0.0012	85,000		102			
계						702		702	
6. 근로자추락방지 설비설치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설치필수)								일위 표6호
1)수직강관비계 (외출비계)	(1개월)H=3.6m								
재료비		m'	0.33	1,203		397			
노무비	비계공	인	0.009	224,359	2,019				
노무비	보통 인부	인	0.0036	125,427	452				
공구손료	인건비의 2%						49		<2019개정>
소 계					2,471	397	49	2,917	
2)수평강관비계	(1개월)								
재료비		m'	0.165	1,117		184			
노무비	비계공	인	0.0045	224,359	1,010				<2019개정>
공구손료	인건비의 2%						20		<2019개정>
소 계					1,010	184	20	1,214	
계					3,481	581	69	4,131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7. 근로자추락방지 내부 안전방망설치	(발주자 판단으로 건축물 상태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높이 2m이상 밑에서 보아 슬레이트가 돌출된 경우								일위 표7호
재료비	PP 망	m'	1	1,233		1,233			3*5/18,500원
노무비	비계공	인	0.012	224,359	2,692				
계					2,692	1,233		3,925	
8. 석면분진 및 완료 후 잔재 물 정밀청소	석면분진청소(보양바닥/ 작업대/도구 등) 잔재물청소(지붕표면/ 구조물/ 건축물 주변 등)								일위 표8호
1)보통 인부		인	0.013	109,819	1,428				
2) 개인보호구	(잔재 물청소 시 착용)								
마스크(일반)	(특급)3M9332K	개	0.018	3,700		67			<2019개정>
보호의(일반)	EM가드 1700 플러스	벌	0.018	3,450		62			<2019개정>
장갑	(니트릴)	켄레	0.018	260		5			<2019개정>
계					1,428	134		1,562	
9. 위생설비 설치	발주자 판단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일위 표9호
1) 비닐 시트	두께 0.15mm	m'	0.0024	44,000		106			<2018.개정>
2) 장비손료	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대	0.00004	1,225,000			49		
3)위생설비 틀 손료	(3단 셋트)	대	0.00004	440,000			18		
계						106	67	173	
합 계	일위 표 1~9호				18,678	5,431	159	24,268	

[주의]

- 본 일위대가는 외장재로서 지붕 재 등 석면해체작업에 적용한다.
- 발주자 또는 감리인은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모든 공종에 대하여 석면해체업자가 작업 전, 중, 후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공정은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특히 모든 자재를 젖은 상태로 제거하고, 각 더미로 포장된 폐기물이 젖은 상태로 보관 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 발주자 또는 감리인은 설계서에 적용된 자재나 개인보호구등 규격에 미달된 것으로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설계서와 맞지 않는 경우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 석면해체 공 1인 일일 작업량은 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해체 공 노무비기준 약22.22m' 제거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품 산출을 위해서는 1인이 일일 몇 제곱미터를 해체하는지 값이 있어야 산출할 수 있음)
- 1) 1인 일일 작업량으로 m' 단가산출 : 석면해체 공 168,117원 ÷ 22.22m' = 7,566원
- 2) 품 산출 : 7,566원 ÷ 168,117원 = 0.045인
- 3) 일 작업량산출 : 168,117원 ÷ 7,566원 = 22.22m'
- 일위 표 7호 석면분진청소는 모든 실의 밀폐공간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하는 품이다.
- 일위 표 8호 작업완료 후 청소는 석면농도측정결과 기준이하로 확인되어 보양비닐을 제거한 이후 먼지(분진)등이 퇴적될(쌓일)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젖은 걸레 또는 진공청소기등 사용 일반적인 청소하는 품이다.
- 일위 표 8호 작업완료 후 청소에 적용된 2) 개인보호구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노동부 지침에 따라 적용한 것이며 일반먼지청소로 보고 일반 보호구를 적용한 것이다.
- 표6호 1), 2) 수직 및 수평 강관비계는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에 근로자추락방지용으로 적용한다.
- 표6호 3) 내부 안전방망 설치는 건축물 내부에서 육안으로 보아 슬레이트가 돌출되어 있거나 천장이나 지붕 등이 견고하지 않아 슬레이트 파손 등으로 발이 빠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축물 등에 적용 한다. 단, 슬레이트 밑 부분 전체에 견고하게 보강되어 있어 발이 빠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없는 건축물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사정이나 설계당시 현장여건 등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2m이상여부 또는 슬레이트 밑 부분

보강상태여부 등 현황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대상 전체 건축물에 일위 표6호 근로자추락방지설비설치 1) 수직비계, 2)수평비계, 3) 내부 안전방망설치를 일괄로 적용 발주한 경우 해체 작업 시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되지 않은 공종은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특별 주의사항 】

- 발주자는 석면해체공사발주 시 공사기간 등 이유로 해체 공 1인이 표준품셈기준 최대 배수 약 20m'이상 해체하도록 과다하게 발주해서는 아니 된다. 배수이상 작업은 부실, 불법공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감리 원이 업무수행(작업 단계별 점검, 사진촬영 등)과 작업자를 콘트롤 할 수 있고, 작업 기준준수하고 작업하는 등 조건을 감안 일일최대투입인력을 약12명 기준으로 일일 작업량은 약240m'가 적정함.

2019년 자재, 장비 등 단가 견적서	2019년 상반기 노임단가
-----------------------	----------------



K.C.I INTERNATIONAL

케이씨아이 인터내셔널

서울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1111호

전화: 02-703-7758 팩스: 02-703-7768

석면철거 장비 & 소모자재 견적서TO: (사) 한국석면환경협회
Attn: 한기채 본부장님 귀하

Date: 2019-01-04

No.	품명	규격	단가	단위	비고
1	비닐종류				
	비닐 바닥포장용_노랑	0.15mm*3m*45m	₩44,000	롤	
	보양비닐 벽체용_노랑	0.08mm*3m*90m	₩44,000	롤	
	보양비닐 벽체용_투명	0.08mm*3m*90m	₩45,000	롤	
	포장비닐_슬레트용_회색	0.15mm*3m*45m	₩58,000	롤	시험성적서
	폐기물봉투_대(인쇄, 노랑)	0.15mm*0.85m*1.3m	₩75,000	묶음	100매/묶음
	폐기물봉투_소(인쇄, 노랑)	0.15mm*0.6m*0.9m	₩45,000	묶음	100매/묶음
2	스티커, 안전장화				
	폐기물부착 스티커	15cm*20cm	₩16,000	권	100매/권 (석면함유 인쇄)
	폐기물부착 스티커	15cm*20cm	₩16,000	권	100매/권 (폐슬레트 인쇄)
	안전장화(단화)	눈슬림, 250~280	₩50,000	켤레	
3	마스크, 필터, 보호안경, 장갑, 테이프				
	전면형 마스크	3M-6800	₩159,000	개	
	반면형 마스크	3M-7502	₩39,000	개	
	방진 마스크필터(특급)	3M-2091	₩4,500	조	
	방진 마스크(특급)	3M-9332K	₩3,700	개	
	보호안경	3M-334AF	₩6,500	개	
	장갑_슬백스	3M-슬백스	₩3,650	조	
	장갑_니트릴	50켤레/통	₩13,000	통	
	장갑_면	10켤레/묶음	₩2,700	묶음	
	테이프(OPP 무인쇄)	50mm*45m*50EA	₩69,000	박스	
4	보호복, 로프				
	보호복(블침투,테핑처리)	EM가드 3300	₩6,500	벌	KS안전인증: 4형식&5형식
	보호복(SMS)	EM가드 1700+	₩3,450	벌	KS안전인증: 5형식&6형식
	PP로프	16mm*140m	₩85,000	롤	
5	흡입기, 샤워기, 배수여과기, 음압측정기록장치				
	흡입기	23m³/min	₩1,900,000	대	
	1차 프리필터		₩20,000	EA	
	2차 미드필터		₩120,000	EA	
	3차 헤파필터		₩170,000	EA	
	온수샤워기	순간온수기+철제케이스+지지대	₩350,000	세트	
	배수여과기	필터여과식, 케이스강철위도장	₩590,000	세트	
	1차필터+2차필터	하우징 포함, Ass'y	₩155,000	조	
	집수조	강철위도장	₩285,000	EA	
	음압측정기록장치		₩1,550,000	EA	한글지원
	위생설비 캐노피	120*120*220*3단	₩440,000	조	
	분무기	12L	₩47,000	EA	
6	기타				
	스모그 테스트기		₩78,000	키트	
	두께 게이지		₩78,000	EA	
	전동드라이버	12V	₩85,000	EA	
	기타		문의		

공 표 일		2019.1.1
번 호	직 종 명	
1002	보 통 인 부	125,427
1006	비 계 공	224,359
*1091	석 면 해 체 공	168,117

2018년 개정 및 시설 사항

【 개정사항 】

□ 일위 표 5호 2)개인보호구 소모품 관련

▣ 개정사유

- ☞ 당초 : 당초 개인보호구 일일 지급수량을 **작업근로자 안전 보호조치를 위해 최소 수량**(작업 전, 오전 휴식 후, 오후작업시작 전, 오후휴식 후) **4회 지급한 것으로 일위대가에 반영하였음.**
- ☞ 개정 : 발주자나 설계사 등이 본 일위대가 표를 활용 **일일 4회 지급한 것으로 설계반영 발주하였으나** 대다수의 석면해체업자 등이 설계에 **반영된 지급 수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발주자의 민원이 많아 지급주기를 최소(오전, 오후) 2회로 수정.**
- ☞ 추가수량 비용부담 : 작업이 이루어진 번지에서 작업이 완료되어 다른 번지작업장으로 이동 하려는 경우 작업 한 번지 내에서 폐기하고 이동을 하여야함. 이 경우 현장조건에 따라 다량 개인보호구가 소요됨.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석면해체업자 부담으로 함.**

□ 일위 표 8호 위생설비 설치 1)비닐시트 관련

- ☞ 당초 :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비닐시트**를 작업을 한 번지에서 작업이 완료되어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 시 폐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일위대가를 작성하였음.**
- ☞ 개정 : 발주자 등 본 원가를 **설계반영 하였으나** 대다수 업체가 **일일 1회 사용한다는 민원이 많아 일일 1회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일일작업량 (석면해체 공 6명 * 22.22㎡ = 133.32㎡)으로 나누어 그 값으로 개정.
- ☞ 추가 수량 비용부담 : 감독기관, 감리원 등 규정에 따라 매번지마다 교체하도록 지시하여 **추가된 비용은 해체업체부담으로 한다.**

□ 일위 표 7호 석면분진 및 잔재 물 정밀청소 관련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2018.01.15.시행]

※ **실외작업은 작업이 이루어진 번지에서 청소를 한 후 다른 번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청소비용은 기존단가를 준용한다.**

▣ 개정사유

2017년~2018년 학교석면해체공사 수행 중과 완료 후 석면잔재 물(분진, 부스러기 등) 등이 발생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상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정대상 사업장은 환경부고시를 개정 발주자 책임자, 석면해체업자 책임자, 현장 감리 원 3자가 입회 잔재 물 잔류여부를 조사 조사표와 조사사진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2018년 01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실외작업청소비용은 당초 석면분진 청소비 준용.**

[주] 감리지정대상 이하 사업장은 잔재 물 잔류여부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함.

▣ 관련법 근거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2018.01.15.시행]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⑥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1.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 필독사항

▣ 특기사항

- 발주자 판단으로 선택하여 함께 (1), (2)안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단, (1)안을 적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에 반영 위생설비설치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 증빙자료(설치근거, 구입자료 등)를 제출받아야 확인 하여야 한다.
- 7. 석면분진 및 완료 후 잔재 물 정밀청소는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작업이 완료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보양비닐제거 후 잔재 물 확인조사표 양식에 명기된 부위에 분진(먼지)이나 부스러기 등이 퇴적될 수 있는 모든 부위를 청소한 것으로 계상한 것이다. <잔재 물 확인조사표 양식참조>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 석면해체 공, 보통 인부, 비제공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공표 상, 하반기 단가를 적용한다.
- 발주자는 석면작업이 완료되면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제2호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규정에 의하여 외부작업은 모든 건축물별로, 내부 작업은 모든 실별로 분진(먼지)이나 부스러기 등이 퇴적될 수 있는 모든 부위를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청소하도록 하고, 발주자 책임자, 석면해체업자 현장책임자, 현장 감리 원 3자가 입회하여 잔재 물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잔재 물 조사표(양식참조)와 부위별 조사사진대장(양식참조)을 작성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감리인(감리원)과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외부작업은 모든 건축물별로, 내부 작업은 모든 실별로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작업 기준을 준수한 작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별 사진(표2 공정도 참조)을 설명서를 기재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고, 사진대장을 작성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 발주자는 석면해체공사 원가작성 시 석면해체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1호에 의거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에 속하고 / 같은 법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2 규정에 따라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속한다는 점 유념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등에 대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석면해체공사 발주 시 과업지시서(시방서)에 [표1.발주자 또는 감리 원 “감” 정산방법 예시/ 표2.실내작업 감리 원 및 석면해체

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3.작업내용서류목록] 명기 감리인과 석면해체업자가 숙지하도록 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을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2013.3.5.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세부 공정을 작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법령 미 숙지로 인하여 공정을 누락 발주하여 석면해체업체가 작업 기준을 준수할 수 없도록 발주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⑧항 2호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서 모든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고<1천만원이하 벌금> /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2천만원이하 과태료(시행 2016.7.28)>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야 한다.

■ 발주자, 설계사 등별도 설계반영

-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아래 사항을 별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①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 법에 따라 기 조사한 건축물은 제외 한다>
- ② 석면비산정도측정< 석면해체하려는 면적이 500㎡이상 사업장>(석면안전관리 법)>
- ③ 석면농도측정<실내작업에 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 ④ 석면감리<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내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 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 포함 한다>(석면안전관리 법)
- ⑤ 제 경비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각종보험료(산재, 고용보험 등), 이윤 , 부가가치세 등은 공사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단, 보험료는 준공 시 가입여부를 확인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 석면해체공사 정산 관련

- 발주자 등은 본 일위대가를 설계에 반영 발주한 경우 모든 건물과 실별로 반영된 모든 품목의 규격, 산출서에 의한 사용 수량에 대하여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육안, 사진, 서류근거 등으로 검사확인하고 미설치, 규격미달, 사용수량미달 등 적합하지 않는 품목은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표1 “감” 정산 예시 참조>
단, 감리인이 지정된 경우는 감리인과 감리 원 명의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내용조서)서류

를 제출 하도록 하여 그 정산 금액으로 석면해체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생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근거

- 9. 위생설비설치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단, 설계에 반영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08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건강관리비 등

가.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 석면해체업자에게 서류 등 제출 요구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

- 발주자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규정에 의거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도록 (2. 발주자 등 석면해체공사 완료보고에 관한 작업내용 관련서류 목록)에 따른 서류일체를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최소 4부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감리인 및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제1호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 규정, 지침, 설계서 등에 따라 시공여부 확인 위해 외부작업은 모든 건축물별로, 내부 작업은 모든 실별로 시공 전, 중, 후로 구분 공정별 사진 (공사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을 설명서 기재촬영 사진대장을 작성 최소 4부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2 공정별 사진촬영 예시 참조>

■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자 관련

- 발주자는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등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교육(이하 “정기안전·보건교육”이라한다)을 이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품,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발주자 등은 낙찰자에게 착수 계 제출 시 관리감독자 교육 수수료 중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 안전조치의 미 조치에 대한 대법판례

※ 발주자가 추락방지 설비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등으로 치상, 치사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해예방 미 조치에 대한 책임위반은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시공업체 동시책임 있음. <대법원판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사실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판례>

표1. 발주자 또는 감리 원 “감” 정산방법 예시 (실외 지붕작업 등)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1. 해체노무비	특수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된 인력이 아닌 보통작업자를 투입 작업한 경우	※ 보통 인부단가로 적용 (1,129원 × 설계해체수량) (해체 공 제공미터 당 단가의 100% × 설계해체수량) “감”	
2. 습윤 작업	습윤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습윤 제공미터 당 단가의 10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해체 시 제거자재에 계속 습윤성 유지되도록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공미터 당 단가의 7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바닥, 장비 등 습윤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공미터 당 단가의 4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사진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습윤 작업하고 이후는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공미터 당 단가의 9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3. 바닥비닐 보양		정산방법 표준<일위대가 기준 바닥보양 규격> {(가로12.172m × 폭3m × 2면)+(세로3.6m×폭3m×2면)}= 94.63㎡ 가로 1면 : 가로12.172m×폭3m = 36.516㎡ 세로 1면 : 세로3.6m×폭3m = 10.8㎡	
	바닥보양 비닐시트를 규격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 보양하는 경우	(단가차액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바닥을 보양하지 않은 경우	(보양 제공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가로 1면을 보양하고 나머지 3면 보양 않은 경우	(보양 제공미터 당 단가의 61.4%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가로 1면과 세로1면을 보양하고 나머지 2면 보양 않은 경우	(보양 제공미터 당 단가의 5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가로 1면과 세로2면을 보양하고 가로 1면 보양 않은 경우	(보양 제공미터 당 단가의 38.6%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4.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보호구손료 중 안전장화 등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료 제공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설계에 반영 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호구 제공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보호구 소모품 중 1일 4회 이상 지급 않은 경우	{(제공미터 당 단가 ÷ 4회) × 미지급횟수 × 당일 해체수량} “감”	

	보호구 소모품 중 설계서에 적용된 단가보다 규격이 미달된 저 단가를 구입 적용한 경우	(단가차액 × 설계해체수량) "감" (차액계산방법예시 설계수량 500제곱미터 가정) (설계가격)6,000원 - (구입가격)4,500원 =1,500원/차액 1,500원 × 5.84 ÷ 22.22 = 394.2원 × 미지급횟수2 = 788.4원 감 금액 : 788.4원 × 500m' = 394,200원 "감"	
--	---	---	--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5. 소모자재	폐기용 비닐 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닐 백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스티커를 각 더미마다 2장 사용하지 않고 1장만 사용한 경우	(스티커 제곱미터 당 단가 ÷ 2) × 당일 해체수량 "감"	
	포장 비닐을 전체규격이 미달된 것으로 사용한 경우	(단가차액 × 설계해체수량) "감"	
	포장 비닐을 전체 1점으로 포장 한 경우	{(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 2) × 설계 해체수량} "감"	
	연결 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연결고리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6. 추락방지 설비 설치	설계 반영되었으나 높이2m이하 건축물에 해당하여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추락방지설비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수직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직광관비계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수직 비계를 설치하고 수평비계를 설치 않은 경우	(수평비계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내부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안전방망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7. 석면분진 청소	사진 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지붕제거표면 잔재물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25%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 바닥을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6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작업대, 공구, 장비 등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15%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8. 위생설비 설치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을 모든 작업장(번 지내)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체노무비의 10% + 위생설비 단가 100%) × 번지별 해체수량 "감"	
	탈의실, 샤워실은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갱의 실만	(해체노무비의 5% + 위생설비단가의 67%) × 번지별 해체수량)	

모든 작업장(번지 내)에 설치한 경우	“감”	
갱의 실을 모든 작업장(번지 내)에 설치하였으나 비닐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위생설비 재료비 단가의 97% × 번지별 해체수량) “감”	

표2. 실외작업 감리 원 및 석면해체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발주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작업 중 공정별(공사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감리 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교육과정)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3.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매일 1회)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보건 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로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5. 연결고리(줄)확인(매일 1회)	6. 휴게실 설치(매일 1회) (사업장 별)

		
【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 법 【환경부고시 제2012-78호】 제4조(필름포장재)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 법 【환경부고시 제2012-78호】 제7조(필름포장재) ②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번지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7.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번지 작업장 별)	8. 위생설비설치 (각 번지 작업장 별)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9. 폐기물 임시보관/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번지 작업장 별)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보건 법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작업장소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 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작업 대상 건축물과 제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별표3 나. 보관의 경우 2)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10. 보양비닐 폐기 (각 번지 작업장 별)	11. 개인보호구 폐기 (각 번지 작업장 별)	12. 포장밀봉 / 스티커 부착 / 연결고리(줄) 장착 (각 번지 별 또는 건물별)

		
【관련규정】 【석면작업지침】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석면작업지침】 7. 7-16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 폴리에틸렌시트 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2-78호】 제4조(필름포장제) 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필름포장제)②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모든 건물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3. 4면 바닥 비닐보양 (모든 건물 별)	14. 추락방지 수직, 수평비계설치 (높이 2m이상 모든 건물 별)	15. 추락방지 내부 안전방망 설치 (높이 2m이상 모든 건물 별)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78조(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재료는 불 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1 공통사항(2)가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 폴리에틸렌 시트로 바닥 0.15mm 이상, 벽 0.08mm 이상 두께로 덮는다. 2접은 권장한다.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슬레이트(sunlight) 등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 슬레이트 위 발판설치는 특허권자 있음
16. 제거 전 습윤(습식) 작업 및 고정 못 제거 (모든 건물 별)		17. 하역 후 2차 습윤(습식)작업 (모든 건물 별)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흡입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별표3 1.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2 작업별 조치사항 (3) 지붕재 해체작업 (가) 지붕재를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2호 별표3 1. 슬레이트 해체·제거의 조치기준 다.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 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흡입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건물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8. 작업대, 도구 등 청소(모든 건물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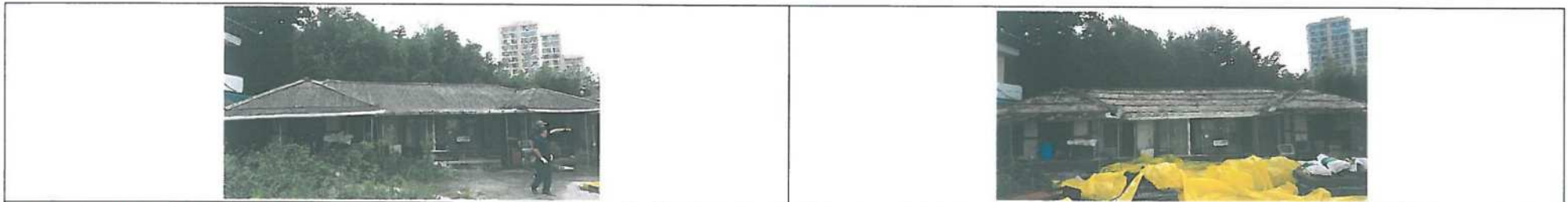
19. 보양바닥 청소(모든 건물 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흡입방지 등) ①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체 전

해체 후



폐기물 반출 검측 사진촬영

운반회사 / 운반차량 번호(반출 시)	상차 과정(반출 시)	보관 중	상차 후

양식1

석면해체·제거공사(실외작업) 완료 후 석면잔재 물 조사표

공사 명 :				해체·제거 면적		☒ 800㎡이상 ☐ 800㎡미만			
조사일자	2018. . .	표기 범례	확인 후 잔재 물 없는 경우	○ 잔재 물 존재한 경우	×	점검해당 없는 경우	-	모든 구역 사진첨부	
연번	건축물 주소	건물명	건축물 지붕	건축물 주변 바닥	기기, 구조물 등 상부		건축물 내부 바닥	폐기물 보관지점 등	기타
					기기	구조 물			
1									
2									
3									
4									
5									

6									
7									
8									
9									
10									

2018. . .

발주자 : 00시청 직)주무관 성명) 0 0 0 (서명/인)

석면해체업자 : 00산업건설㈜ 직)현장대리인 성명) 0 0 0 (서명/인)

감리인 : 00기술연구소㈜ 직)책임감리 원 성명) 0 0 0 (서명/인)

완료 후(실외작업) 잔재 물 점검 사진(예시)

연번1 : 00동			
①건축물 지붕(전면)	후면	우측	좌측
			
②건축물 주변바닥			
			
③기기 등 상부			④구조물 등 상부
			
		⑤건축물 내부 바닥 등	
			
⑥폐기물 보관지점 등		⑦기타	
※ 위치별 완료 후 잔재 물 점검 사진 (공사한 모든 건물에 대해 사진 첨부)			

2. 석면공사 발주 시 자격 등 관련 【 발주자(소유주) 등 필독사항 】

▣ 법리해석 관련

※ 발주자(소유주)등은 법리해석 함에 있어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육과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과 부처답변 또는 유권해석, 사전, 법원판례 등 근거로 해석하여 법리를 오해해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공사 발주관련

※ 발주자(소유주)등은 가능한 석면해체공사는 별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 참조>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소유주”란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 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고용노동부 소유주의 유권해석은 건축물소유주, 재개발조합, 임차인 등을 말한다고 해석되어있음.

즉,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원도급사(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는 소유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업자에 해당하므로 소유자라 할 수 없음.

※ 발주자(소유주)등은 석면해체공사 발주 시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업자로 등록된 모든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 노동부 답변필독>

▣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이나 전문건설업면허는 필요하지 않고,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계설치·해체는 비계면허 없이 할 수 있다는 노동부 답변

○ 답변요지는 **석면해체공사는**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업자등록증 외에 건산법에 의한 **종합이나 전문건설면허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답변.**

○ 또한 **석면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설치하는 비계설치·해체는 비계구조물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석면해체업체가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설치·해체 하도록 하면 된다는 노동부답변.**

신청번호	1AA-1608-005595
신청일	2016-08-01 17:51:44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대표자이름	한기채
연락처	
휴대전화	010-8820-3377

답변일

2016-08-19 18:28:05

처리결과(답변내용)

[질의요지]

2. 고용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여야 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해당 공사 수행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2와 같이 비계설치·해체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해체공사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시 2017.05.15. 참조>

※ 건산 법에 따른 건설공사범위는 건산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면해체 및 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 철거·해체공사 중 석면해체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석면해체업자가 이를 제거하여야 함.

■ 발주자(소유주)등 석면해체공사를 다른 면허요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금지 관련

○ 발주자(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 법령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한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소유주)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4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5652)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자 이외 석면해체·제거업자등록과 관련이 없는 특정면허(비계구조물, 실내건축, 시설물유지보수 등)를 요구하여 순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필한자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부 답변 참조>

즉,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만으로도 어떠한 설비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자재는 신고하고 해체할 수 있다.

[주의]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중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비계, 시설물유지, 실내건축 등)를 요구 입찰참가를 제한한 경우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도 시공, 계약이행이 가능 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 등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경우에 해당함.

<노동부 질의답변 필독>

【 관련법 근거 】

○ 국가당사 계약법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일부개정]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문헌참고.....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지자체 계약법

[시행 2016.1.1.]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7.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 석면해체공사 시공실적심사 및 적격심사 관련

－ 시공실적 －

○ 석면해체공사의 시공실적은 **순수한 석면해체공사 시공실적100%로 심사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은 **발주처발급 증명원이나 관련협회 등에서 계약서 및 설계서 등 검토하여 증빙자료 첨부 발급한 실적증명원** 또는 해체업자가 발주처 등에 **석면해체공사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 또는 종합건설** 외에 전문건설업체 또는 민간인과 계약을 체결 시공한 것으로 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원이나 세금계산서**는 상호 결탁 발행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도급 신고여부 또는 노동청 신고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 －

○ **석면해체공사 적격심사**는 계약예규 등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관련협회는 있으나 실적관리나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함으로써 방안을 강구 **다수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공고 서에 시공실적으로 제한** 발주하여 평가방법은 재무제표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제일 무난함.**

종합평가방법은 석면해체업체 특성상 대다수가 신용평가점수가 낮게 평가돼 특정업체(제조, 폐기물처리 등)만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예시) 단일공사로 석면해체공사 시공실적이 0억 이상 또는 000㎡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3. 발주자 등 석면해체공사 완료보고에 관한 작업내용 관련서류 목록

- 발주자는 작업완료 후 준공 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서식에 의하여 아래 각목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적절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감리인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서류장기보존을 위하여 감리인과 석면해체업자에게 CD, USB 등에 별도저장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연번	서류 목록	내용
1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노동부 서식 의거 작성>
2	작업신고서<직인포함> 및 신고증명서	<노동부 서식 의거 작성> / 노동청 발급 증명서
3	석면작업계획서	감리원이 있는 경우는 감리원이 검토 적절한 것으로 승인한 것
4	관리자, 관리감독자교육수료증 / 근로자 등 특수건강진단 표	교육기관 발급 수료증 / 병원발급 특검검진표
5	최종 준공정산서등	준공 계, 준공검사원, 정산내역서 (감리인이 준공검사 한 경우는 감리인 준공검사 서류로 갈음)
6	석면작업 지시서	발주처 또는 감리인 서명날인된 것
7	검측 요청서(매일)	서식에 의하여 매일 작업 전 발주처 또는 감리 원에게 검측 요청한 자료
8	시공 전, 후 사진대장	※ 실외작업은 모든 건물별로 구분 촬영 한 것. ※ 실내 작업은 모든 실별로 구분 촬영 한 것.
9	공 정 별 사 진 대 장 < 표 2. 사 진 촬 영 예 시 참 조 >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른 각각 공정(순서)별로 촬영한 시공 사진대장(공사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설명서 포함) ※ 실외작업은 모든 건물별로 구분 촬영 한 것. ※ 실내 작업은 모든 실별로 구분 촬영 한 것. <노동부 공사완료보고서 서식 기준에 의거 작성>
10	공사일보 (매일)	당일 작업한 내용/ 해체수량/ 근로자명단 등
11	안전교육 일지(매일)	매일 교육 근로자 서명 된 것.
12	개인보호구 지급대장(매일)	매일 교육 근로자 서명 된 것/ 보호구별 제조회사/ 고유번호 등
13	석면비산정도측정보고서/ 사진촬영자료	실외는 번지별, 실내는 모든 실별
14	석면농도측정보고서/ 사진촬영자료	모든 실별 / 규정에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사진포함
15	석면비산·농도측정 계약서	발주자 또는 석면해체업자와 측정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16	검측결과 통보서(매일)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검측결과(적합,부적합)를 통보한 것 / 실외는 모든 건물명, 실내는 모든 실명과 해체면적이 명기된 것.
17	시정지시서/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있는 경우
18	작업 중지명령서	있는 경우
19	폐기물 임시보관 사진(매일)	보관 중 표지판설치포함
20	폐기물 반출 사진 등	폐기물 상자 및 운반차량번호 등사진
21	지정폐기물 최종처리 확인서	중량개근 표 포함
22	포장 비닐 또는 마대 시험성적서	슬레이트작업 경우에 한 한다
	기타 발주자 및 감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사실 확인 서약서 등<자체서식>

4. 석면해체·제거작업 비용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 석면안전관리 법 】 <2012.4.29. 시행>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 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 2016.7.19. (시행 2016.7.28)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시공방법, 공사기간 등)허용기준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5. 일위대가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세부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

☐ 본 일위 대가 표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래 법령에 의거 최소한의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공종에 대한 단가를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주변거주자 등에게 환경성 석면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 <2013.3.5.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법령을 근거로 작성 한 것이다.

- 1)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2)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3) 제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의 조치기준 제477조~ 제497조 까지.
- 4)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2009.9제정>
- 5) 슬레이트해체·제거작업 표준 메뉴얼 <2012제정>

【 환경부 규정 】

「석면안전관리 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고시」, 「폐기물관리법」 등 아래 법령을 근거로 작성 한 것이다.

- 1)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 2) 【환경부고시 제2012-78호】 제2장 포장재 품질기준 제3조(표시), 제4조(필름포장재), 제3장 포장 방법 제6조(공통사항), 제7조(필름포장재)
- 3) 폐기물 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위 법령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공개한 단가, 품, 수량 산출서 관련법령 근거 참조

- 기타 -

- 본 일위 대가 표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09.8.26.석면제거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26개항목)에 일부 포함된 것임.
- 본 일위 대가 표 노무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노무비 외 공종에 대한 단가 산출과 기존 품 적용에 있어서 기존 적산 일위대가에 의해 유사종목과 공식을 적용 산출 한 것이다.

6. 노동부 · 환경부 등 발주자 책임 법령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백만 원 이하 벌금>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벌칙 :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 <벌칙 :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 석면안전관리 법 】 <2012.4.29. 시행>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①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벌칙 : 1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시행 2016.7.28)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2012. 4. 27.>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

-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7. 발주자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및 작업 기준준수 판단기준

○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 발주 시 아래 2가지 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석면해체업체를 통한 작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발주 시 석면해체업자 통한 작업 대상, 작업신고 대상, 작업 기준준수 판단 방법

□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먼저 기관석면조사 대상을 숙지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7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설비 등 면적이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

○ 일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제곱미터)이상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

○ 주택(부속건물포함)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제곱미터)이상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작업 신고대상

○ 일반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제곱미터)이상

○ 주택(부속건물포함)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제곱미터)이상

□ 석면해체작업 기준준수대상

○ 작업 기준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벌칙: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로 규정 하였다.

따라서 작업 기준준수는 몇 제곱미터이상 인 경우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해체 면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서류보존기간 및 석면작업내용정보공개판례

【 산업안전보건 법 】

제64조(서류의 보존)

-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 ④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개정 2012.1.26>

1.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 기간

☞ 【해설】

- ① 석면관련 책임은 발주자와 해체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 발주자 또한 해체업체의 파산, 서류분실, 훼손 등으로 존속하지 않을 경우 대비 입증 중빙 자료로 30년 보존하여야 하며 향후 작업근로자 또는 주변거주자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 시 제출 입증 증빙자료 활용. <대법판례>
- ② 장기보존 이유는 석면노출 시 잠복기간이 30년~40년 이므로 최소 30년 보존하도록 규정됨.
- ③ 대법원 등 판례 경우 민원제기 상대자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는 발주자 또는 해체업체가 제출 입증 판례.

서울 행정법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398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0환경운동연합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16 정석빌딩 4층
대표자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09. 7. 15.
판 결 선 고 2009. 8. 26.

주 문

1.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대상정보 목록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 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대상정보 목록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원고는 2008. 6. 10. 피고에게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8. 6. 19.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별지 대상정보 목록과 같이 대상정보를 특정하자, 2008. 6. 9. 별지 대상정보 목록 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정보는 강남고속터미널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로서 규제와 관련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미 그 허가가 끝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② 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향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다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법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점,
 - ③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적 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피해가 덜한 기술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수 있고,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_____

 판사 송민경 _____

 판사 김선아 _____

대상정보 목록

순번	자료명칭	자료명칭 해설
1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작업계획서, 작업신고서 등
2	도급대상 작업공정도	작업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
3	기계설비의 종류	1.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냉·온수장치, 배수여과장치, 집수 조 등) 2. 고성능 진공청소기(헤파 필터 장착) 또는 걸레 등(청소용도 사용) 3. 음압기록 장치(실내작업에 한 함) 4. 발전기(현장 전기 단전된 경우에 한 함) 5. 분무기 (습윤 작업 사용) 6. 강관 비계 및 안전방망 등(추락방지 설비) 7. 강관 말 비계 등(작업대) 8. 전동공구 및 망치 등(못 제거 용)
4	운전조건	3호 각목 기계설비 가동 또는 설치
5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사용량	석면조사결과서
6	세부작업계획	석면함유 물질 별 세부적인 작업내용<모든 공정별 사진대장 등>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등	투입 근로자 건강진단 표
8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와 수탁자(운반 또는 초종처리업체)간 체결된 것
9	안전교육일지 등	발주자(감리 원) 또는 관리감독자 매일 실시 자료
10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환경측정 계약서	1. 발주자(원도급사)와 석면해체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2. 석면비산정도측정계약서(작업 중 매일측정) 3. 석면농도측정 계약서(실내작업으로 각 각 실별로 측정)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석면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또는 비치
12	바닥 보양작업 등	1. 실외 작업 경우 비닐시트 0.15mm 두께 2겹 보양(건물 외벽 따라 폭3m 4면 설치) 2. 실내 작업 경우 비닐시트 0.15mm 두께 2겹 보양
13	보호 장비 착용	불 침투성(안전모, 안전대, 보호의, 보호장갑, 안전장화, 보안경(고글) 등
14	비산방지	1. 제거대상 자재 전, 중, 후 습윤 작업(비산방지를 위한 습윤성 유지)

		2. 작업 중, 후 비산방지 청소(제거표면, 보양바닥, 벽, 작업대, 장비, 공구 등)
15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비누, 타올 등), 갱 의실 설치
16	석면함유 물질 표기	1. 슬레이트 외는 석면함유 스티커(각 더미 마다 부착) 2. 슬레이트 경우 폐 슬레이트 전용, 석면함유 스티커 2장 부착(각 더미 마다 부착)
17	안내 및 경고표지판	1. 석면작업장 안내(작업장 주변지역)설치 2. 경고표지판(관계자의 출입금지 등)설치 3. 안전보건 표지(안전모, 보호의, 보호장갑, 안전장화, 보안경, 안전벨트 착용 등)설치
18	벽 보양작업	1. 실외 작업 경우 0.08mm이상 비닐 시트로 모든 창문, 문, 개구부 등 밀폐조치 2. 실내 작업 경우 0.08mm이상 비닐 시트로 모든 창문, 문, 개구부 등 1차 밀폐 후 전체 벽면 보양 작업. 단, 위생설비설치를 위한 문은 제외 한다.
1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소유주) 해당지자체 배출 신고 증명서
20	작업환경측정(농도측정, 비산측정)결과보고서 등	1. 석면비산정도(작업 중 매일) 측정 결과서[주] 해당지자체 보고 2. 석면농도(실내작업으로서 각 각의 실별 측정)측정 결과서[주] 해당 노동청 보고
21	인허가신청사업장 현장 확인 협조요청	석면자재 해체 전 석면해체업체가 발주자(감리 원)에게 매일 검측(점검)요청한 자료
22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감리 원)이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검측한 자료
23	시정지시서	발주자(감리 원)이 검측 결과 재시공 또는 보완 등 지시내용
24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시정지시를 받은 석면해체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감리 원)에게 보고한 자료
25	시정지시 종결 처리 전	석면해체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감리 원)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확인한 자료
26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주】

위 자료명칭 해설은 관련 법령, 규정, 고시, 작업지침 등에 따라 편저자 해설 한 것이다.

정보공개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끝.

9. 석면작업장과 같은 작업 장소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등 대법판례

1) 발주자(지 소장)책임자 및 원도급사 현장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사 및 치상죄 공동책임 있다는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94도660, 1994.5.24.]

【판결요지】

가.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00전력공사의 지 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이 유】

a. 【원도급사 소장】

피고인 2는 피고인 4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인 4 회사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b. 【발주자 지 소장】

피고인 3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00전력공사(발주자) 지중선사업 처 지 소장으로서 피고인 2에게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 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c.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공동책임 이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당원 1994.3.22. 선고 94도35 판결, 1982.6.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

☞ 【판례 해설】 위 판례는 발주자 ⇨ 원도급사와 도급관계에서 발주자의 책임자(소장 또는 공사감독관)가 공사와 관련 원도급사 소장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원도급사 소장과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례.

2) 공사감리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죄 책임 있다는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0도2615, 2010.6.24.]

【이 유】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5.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감리 원)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관련 법령,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 시공계획서 등의 각 내용 등을 근거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가 이 사건 공사감리 책임자인 피고인 4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이 시공자인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시공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원심의 판결이유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 ☞ 【판례 해설】 ① 위 판례는 관련법령 등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감리를 지정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지정된 감리원은 관련법령 업무범위 및 감리계약서, 시공계획서의 각내용, 설계도서 등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보건법위반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 ② 석면공사 또한 일정한 용도·규모는 반드시 석면감리를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로써 지정된 감리원은 면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 것을 사진, 서류 등으로 입증해야 함.

3)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3단계 계약관계 또는 발주자 ⇨원도급사 계약관계에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할 의무주체 사업주는 누구인가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0도2615, 2010.6.24.]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규정]

【이 유】

가. 사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피고인2 원도급사 현장소장]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하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 4802 판결참조).

원심은,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법 제71조에 규정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제1항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한 규정인데, 양자는 모두 그 규범의 수범 자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라는 동일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 4)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그 자체만으로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보건법 (현)제67조의2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양벌규정에 해당 된다는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07도7987, 2008.8.11.]

【판시사항】

-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00의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사실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현67조의2)제1호 및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철거공사는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00건설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 0000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의 1은 해체건조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미리 해체의 방법 및 해체도면 순서,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안전하고 세부적인 해체방법이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체계획에 따라서 작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현3항)에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 법 제29조 제2항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토사·건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제458조 제1항은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해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68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9조 제2항(현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현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현)제67조의2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해체건조물의 붕괴위험 등이 있으므로 그 작업현장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추락하는 없도록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해체계획을 세우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1은 위와 같은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00의 도피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5) 석면해체작업장이 있고,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폐암 등이 악화되거나 발병되면, 그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석면이 원인이라는 인정 하는 판례

【대 법 원】 선고 2007.6.1. 【대 법 원 제 2 부】

[사건]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2.10. 선고2003누21956판결

[판결 선고] 2007.6.1.

【이유】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11.10. 선고2005두8009판결,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이동질서계도, 사고예방 업무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중 비소세포 (非小細胞)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 잠실역에서는 롯데월드의 지하와 지하 역사연결 통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공사과정에서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바닥재로 석면이 1%포함된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역사 중 공사가 진행 중이던 역사를 포함 석면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가 벌어졌는데 많게는90% 적게는 가스켓에서 10~40%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이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이 이루어 졌고, 공사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하여 석면비산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짙은데,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 당시 석면비산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석면유해성 인식정도를 볼 때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 μ m으로 아주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무당시 잠실역 연결공사 당시 석면노출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 종합하면,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그러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